

대법원 2026. 10. 1.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24다255113 (바) 파기환송(일부)

[이혼 등 소송에서 이루어진 사전처분결정에 따라 배우자에게 지급된 부부간 부양료 중 이혼청구 확정 후 지급된 금전에 관하여 부당이득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사전처분의 효력을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로 정한 경우, 가집행선고부 본안판결의 선고로서 사전처분의 효력이 소멸하는지(소극), 2. 이혼 사건이 종결되어 사전처분의 기초가 된 배우자에 대한 부양료청구권이 소멸하면 사전처분 중 부부간 부양료청구권에 대응하는 부분의 효력도 소멸하는지(적극), 3. 위와 같이 사전처분의 효력이 소멸된 후 배우자에게 지급된 부양료 상당액에 대하여 부당이득이 성립하는지(원칙적 적극)◇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에 따른 사전처분이 확정되면 그 결정내용과 같은 법률관계가 임시로 형성되고, 이와 같은 형성력은 대세적 효력이 있으며, 이러한 형성력은 사전처분의 확정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으로서 별도의 집행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다78996 판결 참조). 나아가 사전처분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주문에서 효력의 종기로 명시한 기한이 도래하여야 소멸하고(대법원 2009. 4. 28. 자 2009스19 결정, 대법원 2026. 7. 16. 자 2026스632 결정 등 참조), 확정된 사전처분의 결정내용과 다른 내용의 가집행선고부 본안판결이 선고되더라도 이로써 사전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거나 변경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사전처분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명하는 것으로서(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사전처분으로 여러 의무의 이행을 명한 경우 사전처분 효력의 종기는 각 의무에 대응하는 상대방의 실제법적 권리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혼 사건이 종결되어 사전처분의 기초가 된 배우자에 대한 부양료청구권이 소멸하였다면(대법원 2023. 3. 24. 자 2022스771 결정 참조), 사전처분 중 배우자에 대한 부양료 부분의 효력도 소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경우 사전처분의 효력이 소멸된 이후에 지급된 부양료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이득이 성립한다.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혼, 재산분할, 양육비 등 소송이 병합되어 진행되었음(이하 ‘이 사건 이혼소송’). 이 사건 이혼소송 진행 중 ‘원고는 피고에게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부양료(양육비 등 생활비 일체 포함)로 월 1,8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사전처분결

정(이하 ‘이 사건 사전처분결정’)이 확정되었고, 원고는 위 사전처분결정에 따라 2020. 2.경부터 2022. 6.경까지 피고에게 매월 1,800만 원을 지급하였음. 한편, 이 사건 이혼소송은 2022. 6. 30.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는데, 그중 이혼청구에 대한 부분은 피고의 이혼청구만을 받아들인 1심에 대하여 원고가 불복하지 않았음. 이후 원고가 ‘이 사건 이혼소송 중 이혼청구에 관한 부분은 1심 판결에 대한 항소기간 도과일 무렵 확정되었는데, 이때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부간 부양료 지급의무가 소멸하므로, 위 확정일부터 피고에게 지급한 부양료 상당액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돈이다’라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이 사건 사전처분결정은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월 1,800만 원씩의 지급을 명하였는데, 이 사건 이혼소송은 2022. 6. 30. 확정되었고, 사전처분결정이 확정되면 그 결정 내용과 같은 법률관계가 임시로 형성되고 이와 같은 형성력은 대세적 효력이 있으므로 그에 따른 금전 수수의 법률상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실시하면서, 당사자들 사이의 이혼청구는 이 사건 이혼소송의 항소심판결 선고일인 2022. 2. 17. 확정되었으므로 그 이후부터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 중 배우자에 대한 부양료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 중 2022. 2. 18.부터 2022. 6. 30.까지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함

2024다279324 임금 (차) 파기환송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한 합의의 효력 유무(무효), 2.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을 탈법행위라는 등의 사정을 들어 부정하기 위한 판단기준, 3.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것이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헌법 제32조 제1항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등을 중

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합의가 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구체적인 사정은 그 합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다279402, 280563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기준법에서 ‘소정근로시간’은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이라고 규정하여(제2조 제1항 제8호) 노사 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노사 간의 합의에 의해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의 효력을 위와 같이 탈법행위라는 등의 사정을 들어 부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유의 예외적인 성격에 비추어 최저임금제도의 실질적 잠탈 여부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37460 판결 참조). 따라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목적에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엮히더라도, 결과적으로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이 규범적인 관점에서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과 상당한 불일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 이러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신중하여야 한다. 소정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과 개념적으로 구분되므로, 반드시 양자가 양적으로 정확히 일치할 필요는 없고,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이 일부 감소하는 등의 사정을 반영하여 이와 규범적인 관점에서 상당한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일부 조정하는 것도 허용된다.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것이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구체적인 경위와 시기, 단축 전후의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할 경우 산정되는 시간급 비교대상 임금과 법정 최저임금의 객관적 차이 및 변동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개별 단축합의별로 판단하여야 하고, 실제 근로시간과 단축된 소정근로시간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는 소정근로시간 단축의 비율, 빈도, 급격성 등을 고려하되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이 해당 근무형태 택시운전근로자의 통상적인 1일 근무시간으로 보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는 경우에는 상당한 불일치가 존재한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때 최종적으로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이 실제 근로시간과 규범적으로 상당한 불일치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을 들어 일련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전부의 효력을 일률적으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

☞ 피고는 청주시 소재 택시회사이고, 원고는 2016. 1.부터 2017. 1.까지 피고의 택시운전근로자로 고용되어 1일 2교대로 근무하면서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았음. 2010. 7. 1. 청주시에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된 이후 피고는 노동조합과 사이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존 6시간 50분에서 2010년 6시간, 2015년 4시간, 2018년 3시간 20분으로 순차 단축하는 합의를 하였음. 원고는 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최저임금 미달액 및 미지급 퇴직금을 청구한 사안임

☞ 원심은,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시간에 변동이 없어 소정근로시간을 줄일 만한 뚜렷한 사정이 없었음에도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맞추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점 등에 비추어 2010년과 2015년의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실시하면서, 2010년과 2015년의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목적에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지는 않지만, 단축 비율, 빈도, 급격성 및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이 해당 근무형태 택시운전근로자의 통상적인 1일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예외적 사정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한편 2018년에 최종적으로 단축된 1일 3시간 20분의 소정근로시간이 실제 근로시간과 규범적으로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는 사정을 들어 그 이전에 있었던 2010년과 2015년의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을 일률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2026다205109 사해행위취소 (바) 파기환송

[참소심에서 추가된 사해행위취소청구의 제척기간 준수가 문제된 사건]

◇청구취지가 추가된 경우 추가된 청구취지에 대한 제소기간 준수의 기준 시점(= 원칙적으로 청구취지의 추가·변경 신청이 있는 때)◇

청구취지를 추가하는 경우, 청구취지가 추가된 때에 새로운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므로, 추가된 청구취지에 대한 제소기간 준수 등은 원칙적으로 청구취지의 추가·변경 신청이 있는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6두48737 판결 등 참조).

☞ 원고가 제1심에서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부동산들을 피고에게 매매한

것이 사해행위라면서 ① 그 매매계약의 취소와 원상회복으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였고, 원심에서 위 매매와 근접하는 시점에 체결된 채무자와 피고 사이의 별도 근저당권설정계약도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면서 ②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와 함께 원상회복으로 피고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취지를 추가한 사안임

☞ 원심은 채무자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① 매매계약뿐만 아니라 ② 근저당권설정계약도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와 피고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명하였음

☞ 대법원은,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나, 원고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늦어도 소 제기 무렵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열람하는 등으로 이미 그와 같은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았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추가된 청구 부분의 제척기간 준수 여부에 관하여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보아, 이에 관하여 별다른 심리 없이 본안 판단에 나아간 원심을 파기·환송함

형 사

2024도19179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등 (차) 파기환송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인과 함께 의료행위를 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그 부분 의료행위에 관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가 문제된 사건]

◇1.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 그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적법하게 지급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인과 함께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인과 함께 의료행위를 하였음에도, 의료기관의 대표자 등이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마치 의료인이 적법하게 의료행위를 한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그 부분 의료행위에 관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의료기관의 대표자 등이 이러한 사정을 알고도 미필적으로라도 이를 용인하였다면 사기죄에서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헌법은 국민의 보건에 관한 국가적 보호의무를 선언하고 있고(제36조 제3항), 국민건강

보험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피보험자인 국민이 납부하는 기여금 형태의 보험료와 국고부담을 재원으로 하여 국민 보건에 관하여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하는 일종의 사회보험이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면서(제1조), 공법인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단일의 보험자로 설립하고(제13조),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만을 요양기관으로 건강보험제도 내에 편입시킨 다음 이들로 하여금 요양급여를 실시하게 하고(제42조), 요양급여 실시에 따른 비용 중 공단부담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요양기관이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4조 제1항, 제47조 제1항).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의료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 본문], 이를 위반한 사람은 형사처벌을 받는다(구 의료법 제87조 제2항 제2호).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할 경우에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에 따라 가중된 형사처벌을 받는다. 의료법이 의료인의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면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취지는,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함과 동시에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일반 공중위생과 밀접하고 중대한 관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사람의 생명·신체나 일반 공중위생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고자 하는 데 있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도5531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국민건강보험의 사회보험적 성격, 국민건강보험법의 입법 목적 및 요양급여비용 지급 요건 및 절차,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법적 규율 및 그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칙적으로 의료기관이 요양급여 실시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려면 그 요양급여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내에서 실시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개별 요양급여 행위도 의료법에 따른 적법한 의료행위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적법하게 지급받을 자격이 없고, 이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인과 함께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나아가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인과 함께 의료행위를 하였음에도, 의료기관의 대표자 등이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마치 의료인이 적법하게 의료행위를 한 것

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그 부분 의료행위에 관한 요양급여비용까지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그 부분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또한 의료기관의 대표자 등이 이러한 사정을 알고도 미필적으로라도 이를 용인하였다면 사기죄에서의 고의도 있다고 보아야 한다.

☞ 의료인인 피고인이 주된 의료행위를 하고 비의료인인 갑이 수술의 주요 부분을 시술하는 진료보조행위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단독으로 수술을 시행한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그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아 사기죄 등으로 기소된 사안임

☞ 원심은 피고인에게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사기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실시하면서, 의사인 피고인이 의료인이 아닌 갑과 함께 이 사건 수술을 한 이상 이 사건 병원은 이 사건 수술에 관한 요양급여비용을 적법하게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이 사건 병원의 대표자인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마치 적법하게 의료행위가 이루어진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 사건 수술에 관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는바, 이러한 청구행위는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이러한 기망행위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수술에 관한 요양급여비용을 교부받은 부분은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음. 다만 비의료인 갑은 이 사건 수술 자체에만 가담하였으므로, 그 부분 수술 이외의 입원비, 약제비, 검사비 등과 관련한 요양급여에 대하여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는 한편, 피고인에게 이러한 요양급여비용 편취의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판단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2025도166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차) 파기환송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2항 제1호 나목을 위반하여 입형금물 제공절차를 거치지 않은 호흡조사 음주측정 결과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1.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의 취지 및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유무(원칙적 소극), 2. 법률이나 법규명령의 형식을 갖추고 있더라도 훈시규정이나 단순히 수사의 효율 또는 사건 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마

련된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법률의 위임에 따라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계된 사항을 정한 시행규칙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4.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을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와 그 판단 기준 및 그러한 예외적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자(= 검사)◇

1.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위법수집증거의 배제’라는 제목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는 수사과정의 위법행위를 억제하고 제발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인권 보장이라는 헌법 이념을 실현하고자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을 명시한 것이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2094 판결 등 참조). 헌법 제12조는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법절차와 영장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률에서 이를 이어받아 실체적 진실 규명과 개인의 권리보호 이념을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도록 구체적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과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률의 규범력을 확고하게 유지하고 수사과정의 위법행위를 억제할 필요가 있으므로,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0504 판결 등 참조). 다만 여기에서 말하는 ‘적법한 절차’란 형사절차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영장주의 등 법치국가원리의 근간이 지켜지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를 뜻하므로, 이와 관련이 없는 훈시규정이나 단순히 수사의 효율 또는 사건 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마련된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는 그 규정이 법률이나 법규명령의 형식을 갖추고 있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한편 법률이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계된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부령(部令)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이에 따라 행정각부의 장이 시행규칙으로 이를 정한 경우, 그 시행규칙 조항은 모법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진다.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률과 법규명령에서 정한 적법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증거가 수집되었다면, 그 증거는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의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배제된다.

2.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그 증거능력을 확일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헌법과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률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 실체적 진실 규명을 통한 정당한 형벌권의 실현도 헌법과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률이 형사소송 절차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중요한 목표이자 이념이기 때문

이다.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률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절차 조항의 취지, 위반 내용과 정도,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나 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이러한 권리나 법익과 피고인 사이의 관련성, 절차 위반행위와 증거 수집 사이의 관련성,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 306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0504 판결 등 참조).

한편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를 함부로 인정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헌법과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는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원칙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므로, 법원은 구체적인 사안이 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유념하여야 한다. 나아가, 법원이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에도 불구하고, 그 수집된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려면, 그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것을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763 판결 등 참조).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는데, 피고인에 대한 호흡조사 방식의 음주측정 당시 ‘입 안의 잔류 알코올을 행귀낼 수 있도록 운전자에게 음용수를 제공할 것’이라는 절차(이하 ‘입행공물 제공절차’)를 규정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2항 제1호 나목(이하 ‘이 사건 시행규칙 조항’)이 시행되고 있었음에도,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입행공물을 제공하지 않은 채 음주종료 시로부터 50분 후이자 운전종료 시로부터 25분 후 시점에 호흡조사 방식으로 음주측정을 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0.081%로 측정된 사안임

☞ 원심은 이 사건 시행규칙 조항이 법규명령임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입행공물 제공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것을 피고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으로 보아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의 적법절차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나아가 음주측정 당시 음주종료 후 이미 20분 넘게 경과된 시점이었고 구강 내 잔류 알코올에 영향을 줄 다른 요소가 특별히 확인된 바도 없어 입행공이 굳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당시 확

인된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술에 상당히 취해 있었음을 경험칙상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실시하면서, 이 사건 시행규칙 조항은 법규명령에 해당하고 이 사건 시행규칙 조항에서 규정한 입행공물 제공절차의 위반은 적법절차 위반에 해당하므로 이를 위반하여 취득한 이 사건 호흡조사 음주측정 결과는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고, 나아가 절차 위반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 또는 법익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어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이 침해되었다고 볼 것이어서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결국 이 사건 호흡조사 음주측정 결과는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없다고 보아, 이를 증거로 사용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2026도1100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등 (자) 상고이각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종료 시점과 집행 종료 후 복제본에서 수집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1. 중단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이 계속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고, 경찰이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수사를 일단 마무리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우, 늦어도 그 신청 무렵에는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집행 종료 후 삭제·폐기되었어야 할 복제본을 재탐색하여 선별·출력한 전자정보의 위법성이 사후 압수·수색영장 발부로 치유되는지 여부(소극)◇

수사기관이 유관정보를 선별하여 압수한 후에도 무관정보를 삭제·폐기·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면 무관정보 부분에 대하여는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서는 전자정보를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여 취득한 것이어서 위법하고,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었다거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여 그 위법성이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2. 1. 14. 자 2021도1586 결정 등 참조). 수사기관이 새로운 범죄혐의의 수사를 위하여 무관정보가 남아 있는 복제본을 열람하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으로 압수되지 않은 전자정보를 영장 없이 수색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따라서 복제본은 더 이상 수사기관의 탐색, 복제 또는 출력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수사기관은 새로운 범죄혐의의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기존 압수·수색 과정에서 출력하거나 복제한 유관정보의 결과물을 열람할 수 있을 뿐이다.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복제본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압수·수색절차가 종료됨에 따라 당연히 삭제·폐기되었어야 할 전자정

보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위법하다(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도19782 판결, 대법원 2023. 10. 18. 선고 2023도8752 판결 등 참조).

☞ 경찰은 제1차 압수·수색영장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여 전자정보를 복제한 뒤 이를 탐색하던 중 다른 피해자들에 관한 성매매 알선 관련 전자정보의 존재를 인식하고 탐색을 중단하였음. 이후 제2차 압수·수색영장 청구 중 해당 전자정보 부분이 영장 청구서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으나, 경찰은 별도의 영장을 다시 신청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위 복제본을 계속 보관하였음. 이후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 후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계기로 별도의 영장 없이 위 복제본을 재탐색하여 해당 전자정보를 선별·출력한 다음 제3차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이미 선별·출력된 전자정보를 압수한 사안임

☞ 원심은, 아무리 늦어도 경찰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시점에는 제1차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이 종료되었고, 따라서 경찰이 그 후 삭제·폐기되었어야 할 복제본을 별도의 영장 없이 재탐색하여 선별·출력한 전자정보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실시하면서, 경찰이 위 복제본을 재탐색할 무렵까지 약 3개월 전에 중단된 제1차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집행이 종료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경찰이 그때까지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수사를 일단 마무리하고 신병확보를 위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경찰은 늦어도 위 구속영장 신청 무렵에는 제1차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후 삭제·폐기되었어야 할 위 복제본을 재탐색하여 선별·출력한 전자정보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보아,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특 별

2024두49339 추가진료비지급거부처분취소 (바) 상고기각

[장애 일시보상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한 추가 진료비 지급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 피해보상청구권이 상속 대상인지 여부(적극), 2. 장애 일시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한 진료비 지급을 제한하는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29조 제1호 가목 단서(이하 ‘이 사건 단서규정’)의 의미 및 이 사건 단서규정이 감염병예방법 제71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모법조항’)의 위임 범위를 일탈하거나 평등원칙에 위배되거나 재산권을 침해하여 무효인지 여부(소극)◇

1. 소송수계신청에 대한 판단

감염병예방법 제71조 제1항,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예방접종 피해보상청구권은 공법상 권리이기는 하나 피고의 결정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예방접종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인정되는 금전채권으로서 재산권의 성격을 가지므로, 예방접종 피해보상청구권자가 사망한 경우 재산권의 상속에 관한 일반법인 민법에 따라 상속인에게 상속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단서 규정의 위임범위 일탈 여부

이 사건 모법 조항 및 단서 규정의 문언, 규정 체계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단서 규정이 이 사건 모법 조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난다고 볼 수 없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감염병예방법 제71조에 따른 예방접종 피해보상제도는 감염병예방법이 예방접종의 실시 과정에서 드물기는 하지만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해서 특별히 인정한 독자적인 피해보상제도이다. 이러한 예방접종 피해보상제도의 취지에 감염병예방법이 국민에게 예방접종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까지 더하여 보면, 예방접종 피해보상의 내용은 국가의 재정부담능력, 다른 사회보장제도 등 전체적인 사회보장의 수준, 예방접종 피해보상제도의 사회정책적인 측면 등에 따라 정하여지는 입법형성의 자유가 주어진 영역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입법자는 이러한 입법형성의 자유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모법 조항으로 예방접종 피해보상금에 관한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고,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예방접종 피해보상금의 지급 기준은 예방접종 피해보상청구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형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예방접종 피해보상금의 산정방법 등 예방접종 피해보상금을 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법률에 일일이 규정하는 것이 입법기술적으로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 등에 맞추어 적절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영역으로서 입법자가 형식적 법률로 스스로 규율하여야 하는 본질적 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이 사건 단서 규정은 장애 일시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 발생하는 보존적 치료에 관한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단서 규정은 장애 일시보상금이 장애의 진료비에 대한 보상까지 포함하고 있음을 전제로 장애 일시보상금을 지급받은 이후 추가로 발생하는 진료비의 ‘중복 지급’을 제한하려는 취지에서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이 2015. 1. 6. 대통령령 제26024호로 개정되면서 도입되었다.

2) 앞서 살핀 감염병예방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 피해보상제도의 입법 취지에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장애 일시보상금에는 그 지급 이후에 발생하는 보존적 치료에 관한 진료비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이 사건 단서 규정은 장애 일시보상금을 지급받았음에도 그 이후에 발생하는 보존적 치료에 관한 진료비를 지급받는 것을 ‘중복 지급’으로 보고 이를 제한하려는 것이다.

가) 감염병예방법 제71조 제1항은 질병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에게는 진료비 전액 등을, 장애인이 된 사람에게는 장애 일시보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감염병예방법이 질병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과 장애인이 된 사람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모법 조항의 위임에 따른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29조 제3호 가목은 장애 일시보상금의 지급 기준에 관하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이하 ‘사망 일시보상금’이라 한다)의 100분의 100, 위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경우에는 사망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55, 그 외의 장애인으로서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서 정한 장애 등급이나 장해 등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사망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장해는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경우)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이고(제3조 제1항 제7호),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장해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장해와 동일하며(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는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이므로(제5조 제5호), 위 ‘장해’는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증상이 일단 고정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한편 국민연금법 제67조 제2항은 장애결정 기준일(장애 정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에 관하여 완치일(질병이나 부상이 의학적으로 치유된 날, 더 이상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그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인정되는 날 또는 증상의 고정성은 인정되지 아니하나 증상의 정도를 고려할 때 완치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날)을 일응의 기준으로 삼고 있고,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은 ‘장애인’을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정의하며, 같은 조 제2항 등의 순차 위임을 받아 제정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42호 장애정도판정기준의 제1장 4. 나. ‘장애유형별 장애진단시기’에서 대부분의 장애유형에 관하여 장애진단 시기를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위 법령들도 ‘장애’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증상의 고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감염병예방법 제7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장애인’이 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애 일시보상금은 원칙적으로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증상이 일단 고정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있다.

다) 감염병예방법령에 따른 장애 일시보상금 최고액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 최고액보다 상당히 큰 금액인 데 반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장해진단 이후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재요양이 필요한 경우가 아닌 이상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들 보상금의 성격이 현저히 다르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장애 일시보상금에 그 지급 이후에 발생하는 보존적 치료에 관한 진료비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보지 않으면 이러한 차이를 설명하기 어렵다.

한편 감염병예방법 제7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예방접종으로 장애인이 되어 장애 일시보상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예방접종으로 인한 질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 사건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질병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으로서 진료비 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장애 일시보상금에 이러한 적극적 치료에 관한 진료비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해석은 헌법상 평등원칙에도 부합한다.

3) 예방접종 피해보상의 사안에 따라 예방접종 피해자가 진료비 지급청구 이전에 장애 일시보상금 지급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이 경우 진료비를 지급받기 전에 장애 일시보상금을 먼저 지급받게 된다. 이 사건 단서 규정을 장애 일시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 전후에 발생한 미지급 진료비를 모두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면, 예방접종 피해자는 단지 장애 일시보상금을 먼저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진료비를 전혀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데, 이 사건 단서 규정이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을 예방하고 도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이 사건 모법 조항은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방접종 피해보상금의 중복 지급이 허용되지 않음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모법 조항에 따른 '예방접종 피해보상금에 관한 기준'에는 '중복 지급을 제한하는 기준'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단서 규정은 장애 일시보상금을 지급받았음에도 그 이후에 발생하는 보존적 치료에 관한 진료비를 지급받는 것을 중복 지급으로서 제한하는 내용이고, 이는 이 사건 모법 조항에 따른 '중복 지급을 제한하는 기준'을 정한 것이다. 이 사건 단서 규정이 이 사건 모법 조항에 따른 '예방접종 피해보상금에 관한 기준'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은 법률문언에 관한 통상적인 해석의 한계를 벗어난다고 볼 수 없다. 이를 고려하면 이 사건 단서 규정의 내용은 이 사건 모법 조항 자체로부터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고, 이를 두고 새로운 입법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마. 이 사건 단서 규정을 위와 같이 이 사건 모법 조항에 합치되도록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이 사건 단서 규정은 이 사건 모법 조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새로운 예방접종 피해보상금 지급 제한 사유를 창설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모법 조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난다는 이유로 쉽게 무효를 선언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9. 5. 16. 2017두45698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 단서 규정의 평등원칙 위배 여부 및 재산권 침해 여부

가. 평등원칙 위배 여부

이 사건 단서 규정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예방접종 피해보상의 내용은 국가의 재정부담능력, 다른 사회보장제도 등 전체적인 사회보장의 수준, 예방접종 피해보상제도의 사회정책적인 측면 등에 따라 정하여지는 입법형성의 자유가 주어진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기본적으로 국가의 입법정책에 달려 있다고 보아야 한다. 예방접종 피해보상의 기준에 관한 이 사건 단서 규정에 대해서는 자의 금지원칙을 적용하여 평등원칙 위배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단서 규정은 앞서 본 것처럼 '장애 일시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 발생하는 보존적 치료에 관한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단서 규정은 예방접종 피해자 중 '보존적 치료에 관한 진료비를 지출한 사람'을 장애 일시보상금을 지급받았는지 여부로 다르게 취급하고 있다.

3)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장애 일시보상금에는 그 지급 이후에 발생하는 보존적 치료에 관한 진료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장애 일시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장애 일시보상금에 포함된 보존적 치료에 관한 진료비를 이미 지급받았다고 볼 수 있는 반면, 아직

장애 일시보상금을 지급받지 않은 사람은 보존적 치료에 관한 진료비를 지급받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보존적 치료에 관한 진료비의 지급이 중복 지급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고 이를 제한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단서 규정은 이를 고려하여 장애 일시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그 이후에 발생하는 보존적 치료에 관한 진료비의 지급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이상, 장애 일시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한 자의적인 차별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재산권 침해 여부

이 사건 단서 규정은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단서 규정은 장애 일시보상금이 장래의 보존적 치료에 관한 진료비까지 포함하고 있음을 전제로 장애 일시보상금을 지급받은 이후 추가로 발생하는 보존적 치료에 관한 진료비의 중복 지급을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또한 장애 일시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그 이후에 발생하는 보존적 치료에 관한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으로 볼 수 있다.

2) 장애 일시보상금에는 이미 그 지급 이후에 발생하는 보존적 치료에 관한 진료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중복 지급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지급 이후에 발생하는 보존적 치료에 관한 진료비 전부의 지급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 또한 이 사건 단서 규정은 보존적 치료에 관한 진료비의 중복 지급 방지라는 중요한 공익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예방접종 피해자가 장애 일시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이후에 발생하는 보존적 치료에 관한 진료비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지만, 예방접종 피해자는 장애 일시보상금 지급 전후에 발생한 적극적 치료에 관한 진료비와 지급 전에 발생한 보존적 치료에 관한 진료비를 모두 지급받을 수 있어 진료비의 대부분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 사건 단서 규정으로 예방접종 피해보상청구권이 제한되는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단서 규정에 따른 불이익이 위와 같은 공익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비해 크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단서 규정은 침해의 최소성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고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고 있다.

☞ 원고들의 피상속인(이하 '망인')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길랑-바레 증후군 진단을 받고 지체장애 1급으로 판정되었으며, 2021. 5. 28. 피고(질병관리청장)로부터 장애 일시보상금과 일부 진료비·간병비를 지급받았음. 이후 망인이 지급받지 못한 진료비의 추가 지급을 청구하자, 피고는 이 사건 단서규정에 따라 장애 일시보상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추가 진료비 전부의 지급을 거부하였음. 망인이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 원심판결 선고 전에 사망하자, 상속인인 원고들이 소송수계를 신청한 사안

임

☞ 원심은,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29조 제1호 가목 단서가 감염병예방법 제71조 제1항의 위임범위를 일탈하고 장애 일시보상금을 지급받은 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며 예방접종 피해보상청구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이에 근거한 진료비 지급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실시하면서, 예방접종 피해보상청구권은 상속의 대상이 되므로 원고들의 소송수계신청은 적법하고, 위 단서 규정은 장애 일시보상금 지급 이후에 발생하는 보존적 치료에 관한 진료비의 중복 지급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이를 무효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적절하지 않지만, 피고가 그 지급 이전에 발생한 진료비와 지급 이후에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적극적 치료에 관한 진료비까지 일률적으로 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며, 위법한 부분만을 특정·분리하여 취소할 수도 없다고 보아, 처분 전부를 취소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함

2024두65713 손실보상금 (바) 파기환송

[토지 수용보상금 산정 시 송전선 소유를 위한 구분지상권의 평가방법이 문제된 사건]

◇취득하는 토지에 설정된 소유권 외의 권리가 일반적으로 양도성이 없는 ‘송전선 등을 소유하기 위하여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공간에 설정된 구분지상권’인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 제2항에 따른 평가방법(= ‘당해 권리의 유무에 따른 토지의 가격차액 기준’과 ‘권리설정계약 기준’ 중 적절한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67조 제1항은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 성립 당시의 가격을, 제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제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70조 제1항은 ‘협의나 제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하되, 그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 법령에 따른 그 토지의 이용계획,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과 그 밖에 그 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은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6항에서 ‘취득하는 토지에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방법은 투자비용, 예상 수익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9조는 ‘취득하는 토지에 설정된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목적이 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권리가 없는 것으로 하여 제22조 내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에서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의 가액을 뺀 금액으로 평가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8조 제1항 전문은 ‘취득하는 토지에 설정된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하여는 당해 권리의 종류, 존속기간 및 기대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라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2항은 ‘취득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하여는 거래사래비교법에 의하여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되, 일반적으로 양도성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권리의 유무에 따른 토지의 가격차액 또는 권리설정 계약을 기준으로 평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토지보상법령의 내용 및 체계에 비추어 보면, 취득하는 토지에 설정된 소유권 외의 권리가 일반적으로 양도성이 없는 ‘송전선 등을 소유하기 위하여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공간에 설정된 구분지상권’인 경우에는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토지 부분의 가격시점 가액에 ‘입체이용저해율’ 등을 적용한 ‘당해 권리의 유무에 따른 토지의 가격차액 기준’과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구분지상권 설정계약에 따른 치료 일시금을 가격시점으로 수정한 ‘권리설정계약 기준’ 중 적절한 기준을 적용하여 구분지상권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피고가 시행하는 공공주택사업에 관하여 송전선 소유 목적의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원고 소유 토지들에 관하여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을 하였음. 이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실보상금의 증액을 청구하였는데, 토지 보상액에서 공제할 구분지상권 가액의 평가방법이 문제된 사안임

☞ 원심은, 구분지상권의 가액을 해당 토지 부분의 가격시점 가액에 입체이용저해율 등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평가할 수 없고 권리설정계약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보아,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한 수정 없이 설정계약 당시의 치료 일시금을 그대로 가격시점의 구분지상권 가액으로 산정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실시하면서, 위 각 구분지상권은 ‘당해 권리의 유무에 따른 토지의 가격차액 기준’과 ‘권리설정계약 기준’ 중 그 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는 기준을 선택하여 평가할 수 있고, 권리설정계약을 기준으로 평가할 때에는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치료 일시금을 가격시점으로 수정하여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함

2026두30964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차) 상고기각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 시 순자산가액에 합산하는 영업권 평가액을 산정하면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인 경우에도 과거 3년간의 순손익액을 기초로 한 가중평균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1호의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부분이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따른 가액을 배제하고 제2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기 위한 별도의 요건인지 여부(소극),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26. 1. 2. 재정경제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3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따른 가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는 제2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그 경우의 평가방법 및 예외적으로 제1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의 판단 기준과 증명책임, 3.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및 제2항에 관한 위 법리가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9조 제3항에 따른 영업권 평가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1.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은,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은 원칙적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와 '1주당 순자산가치'(해당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를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의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은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때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3) +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2) +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1)] ÷ 6'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이하 '제1항 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제1호)을 비롯

한 그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이하 '제2항 가액'이라 한다)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1호의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26. 1. 2. 재정경제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3 제1항은 위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중 하나로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자산수증이익 등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제6호) 등을 들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들의 문언 및 체계 등을 종합하면,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1호의 법문 중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이라는 부분은, 기획재정부령에 위임할 사항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자 제1항 가액이 아닌 제2항 가액에 의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들의 속성을 대표적으로 예시한 것일 뿐이지 그 자체로 제1항 가액이 배제되어 제2항 가액이 적용되기 위한 별도의 요건을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1호의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국면에서 위 각 사유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고려하면 충분하고, 나아가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에 해당하는지를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요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구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호는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이어서 이를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이는 사유들을 규정한 것이므로, 여기에 규정된 사유가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 가액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다. 이러한 법리는 제2항 가액인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이 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제2항 가액이 적용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제2항 가액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제1항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이상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만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한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의 방법 등 상속세법이 마련한 보충적 평가

방법 중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31253 판결 등 참조).

아울러 본래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는 그 주식이 갖는 미래의 기대수익을 추정한 다음 그 현재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미래의 기대수익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므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은 과거의 실적이며 미래에도 계속되리라는 전제하에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토대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도록 정한 것이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9140 판결 등 참조). 이를 고려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가액에 따라 다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1항 가액이 과거의 실적을 바탕으로 한 것임에도 여전히 미래의 기대수익을 적절하게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특별한 사정의 존재는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존재함에도 제1항 가액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3.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9조 제3항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영업권을 평가함에 있어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56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법리들은 위 규정에 따라 영업권을 평가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이 사건 주식(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거래에 대하여, 피고는 이를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한 경우로 보아 법인세법 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였고,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하면서, 이 사건 법인의 순자산가액에 합산하는 영업권 평가액 산정 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적용하였음.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법인에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6호의 사유가 존재하므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피고는 그렇다 하더라도 위 시행령 조문의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 사안임

☞ 원심은, 영업권의 평가를 위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도록 한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산정함에 있어, 2019 사업연도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 당시 이 사건 법인의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자산수증이익 등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를 토대로 이 사건 법인의 경우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에 해당하는지를 추가로 살필 필요 없이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6호의 사유를 충족하는 이상 제1항 가액과 같은 방식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나아가 위 제6호 사유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가액과 같은 방식이 다시 적용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피고 주장을 배척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실시하면서, 원심의 판단에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1호 및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6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으며, 상고를 기각함